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936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2.

발 의 자 : 한민수・이연희・박상혁 이해식・이정문・박균택 박해철・송옥주・김영호 한병도・권칠승 의원 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치적,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자극적인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등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사회적 갈등 조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 지속 유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임.

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신고 체계 구축 및 삭제 절차 마련 등 관련 의무를 부여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

하고자 함(안 제44조의11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허위조작정보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·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”를 “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부터 제6호까지”로 한다.

2의2. 허위조작정보

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11(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
2. 신고된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등 조치 절차 마련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사

항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4의3.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 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① ---------- -----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“허위조작정보”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·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·2. (생 략) <신 설> 3. ~ 9. (생 략)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2의2. 허위조작정보 3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부터 제6호까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4조의11(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1.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 2. 신고된 허위조작정보의 삭제 등 조치 절차 마련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

	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76조(과태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2의6. (생 략)	1. ~ 2의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4. ~ 12. (생 략)	4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의3.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
4의3.·4의4. (생 략)	4의4.·4의5. (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)
5. ~ 25. (생 략)	5. ~ 2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